

August 18,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48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8. 10. ~ 8. 14.)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 8. 7.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자동차제작자의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 ②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 ③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추정 요건으로 규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0. 8. 11.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사업장 단위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하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시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② 제3자의 배출권 장내거래를 허용하되 3차 계획기간('21~'25)에는 제3자의 배출권거래소에서의 거래만 가능토록 함, ③ 배출권 매도·매수 호가 제시, 배출권 거래를 시장조성자의 업무로 규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보건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 8. 12.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니코틴 용액량 1 ml당 1,050원 적용, ② 현재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대상에 포함, ③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적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참고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자부]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2020. 8. 13.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23년까지 4.6조원),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4년), 1,000억원 규모의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 해외진출 투자 적극 지원, ② 비대면 헬스케어 제품의 국제표준화 및 인증 추진, ③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의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략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K-서비스로 수출 돌파구 마련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13호)]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인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자파 강도보고기한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13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LTE)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무선국 검사 시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검사업무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관보19813호)]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환경·인권·부패근절에 관한 기업의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 3부터 제7호까지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 및 제44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6인)]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설치의 제한지역을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안정성 제고 및 영업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및 제12조의4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1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5제1항제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1인)]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홍보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조의2, 제20조제4항설 및 제20조제5항·제6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광고를 추천·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마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20조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제25조제7항 및 제8항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5인)]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6인)]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주관사업자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78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 · 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